

# 녹색식품 표시제에 대한 제언

## Suggestion on Green Food Labeling

녹색식품 표시제는 현재 2009년 7월 식품위생법일부개정안으로 발의되어 있는 상태로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2010년 5월 식품안전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이 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한 바 있다.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는 없었으나 이 세미나를 통해 녹색식품표시제에 대한 고려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기존 식품첨가물과 관련 표시제도와와의 경계성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미 <유기가공식품>,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이 시행되고 있고 많은 제품들이 지정받아 표시하고 있다. 유시가공식품은 식품첨가물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의 경우에도 타르색소를 사용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녹색식품 표시제는 화학적 합성첨가물 대신 천연재료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어떤 범위까지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녹색식품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대두하게 된다. 또한 이미 식품첨가물과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표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첨가물에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첫 번째 제기된 문제와 유사하게 녹색식품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미 식품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녹색식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전혀 천연원료로 대체할 수 없으며 제품의 유형상 반드시 식품첨가물이 들어가야 만들어지는 식품에 대해서는 녹색식품의 범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되고 있다.

셋째, 천연원료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이라도 식품의 원료의 공급



양 지 영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상임이사

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외국의 경우 천연첨가물의 경우에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화학적 식품첨가물은 안전하지 않다는 흑백논리의 관점을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원료를 사용함에 따라 추가적 비용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생산시 수율의 저하를 초래하는 결과로 제품의 가격에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소비자가 인지하고 표시제도에 따로 인해 높은 가격으로도 구매할지에 대한 소비자구매의사를 타진하기 어려움도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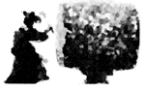
넷째, 화학적 식품첨가물을 천연원료로 대체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이런 원료를 찾거나 제조하는 것은 개발비용 및 기술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접근하기 힘들 수 있다. 이에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제조업체의 제조생산을 확산해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다섯째, 녹색식품 표시제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제도라서 수출품의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단지 국내 인증만을 위해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국내시장을 보고 이런 표시제도에 부합되는 제품을 개발하

고 판매함에 큰 이점을 갖기 어려움이 있다.

여섯째, 다양한 표시제도가 있음으로 표시면적이 적은 식품의 경우에는 이런 표시가 효율적으로 소비자가 인지 못할 수도 있으며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런 표시가 힘들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표시가 가능한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일곱째, 녹색식품 표시의 시행이 된다면 천연원료의 사용이 안전하고 화학적 첨가물을 사용한 제품은 점차 소비자로부터 시장이 축소되거나 사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식품첨가물의 합성과 천연의 구분은 제법상의 기준이지 안전성의 분류가 아님에도 이런 표시제도의 시행은 천연첨가물을 사용되면 좋은 식품이고, 합성첨가물을 사용하면 일반식품 또는 유해한 식품인 논리로 비춰져 적절치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식품산업에 부정적 역할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즉 화학적 합성첨가물로 가공한 제품의 시장퇴출이 유도될 수 있고, 천연첨가물로 대체 불가능한 제품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유발될 수도 있다. 또한 천연원료를 제조하기 위해 원료수급의 제한성으로 불필요한 원료확보를 위한 경쟁을 초래할 수도 있고 식품소재 및 첨가물산업의 축소 및 시장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녹색식품 표시제에 대한 산업체 입장에서의 다양한 걱정들과 안전한 식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의 양편 저울 속에 녹색식품 표시제는 많은 고심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인다. 향후 바람직한 녹색식품 표시제의 도입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천연원료/천연첨가물의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얼마만큼의 원료가 대체 가능한지를 공적인 기관을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대체원료의 공급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녹색식품의 제조생산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식품첨가물과 관련한 표시제도가 있음에도 녹색식품 표시제를 행하여야 하는 차별성, 필요성에 대해 산업체,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공감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화학적 합성첨가물의 경우에도 <식품첨가물공정>상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법적으로 인정된 것들이다. 마치 화학적 식품첨가물 사용에 따라 인증식품과 비인증식품에 대해 소비자가 흑백논리로 보지 않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의 창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제품에 대한 흑백논리 외에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계층간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화학적

합성첨가물의 사용을 감소하거나 천연물 대체에 의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 구매력이 형성되도록 하며, 이로써 소비자의 불신을 저감화시키고,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시키며, 품질보증효과로 인해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 축소시키는 효과가 유발될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녹색식품 표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받고 그 도입여부를 판단하는 신중함을 이야기 하고 싶다. 어떠한 제도의 도입은 절대적 관리관청의 시행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소비자 인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갖게하느냐의 문제와 이러한 제품을 기업 스스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밑바탕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기 위해 마련된 좋은 목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각 분야의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신제품 및 업체 소개**  
**월간 포장계 편집실**  
**(02)835-9041**  
**E-mail : kopac@chollian.net**